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4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상담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223백만원 반영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03.16. ~ 04.04.)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올바르게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5.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7.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 종사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정당한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

도 ·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조직 및 구성), 제6조(운영 및 위탁)
- 비용발생 요인 :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속적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 명, 천원)

구 분	종사자	소요예산	비 고
계		222,7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방상담사업)	3	113,9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2	97,47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	11,410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국비,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 330 - 2124

